

워크샵자료집

비교법제자료 07-08

제 2 차 FTA연구분과 워크샵

2007. 8. 31.

제 2 차 FTA연구분과 워크샵

- ◆ 일 시 : 2007년 8월 31일 (금), 14:00~18:00
-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 참석자 : FTA연구분과 외부전문가 및 원내 분과위원

구 분	성명 및 소속
외부전문가	곽 중 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 대 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동 훈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김 성 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김 원 경 (외교통상부 한·미 FTA협상단 팀장) 김 인 숙 (경기대학교 교수) 김 호 정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성 희 활 (증권선물거래소 법무팀장) 심 영 규 (배재대학교 교수) 이 동 룰 (건국대학교 교수) 정 영 진 (전남대학교 교수) 최 승 환 (경희대학교 교수) 최 원 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홍 승 진 (법제처 법제관)
원내 분과위원	강 문 수 (행정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강 현 철 (법령용어정비팀 부연구위원) 김 두 진 (산업경제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송 영 선 (법령용어정비팀 전문연구위원) 최 성 근 (산업경제법제연구팀 연구위원) 최 환 용 (행정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진행순서 ◆

○ 사회자 : 최성근(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04:00~15:30 제1주제 발표
“한미 FTA 체결과 법적 쟁점”

발 표 자 : 최 승 환(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 론 자 : 김 원 경(외교통상부 한미FTA협상단 팀장)

◇ 15:30~15:45 : Coffee Break

◇ 15:45~17:15 제2주제 발표
“한미 FTA체결과 법적대응방안”

발 표 자 : 최 원 목(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 론 자 : 박 찬 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7:15~18:00 분과회의

- 2007년 연구사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 2008년 FTA연구과제 제안

◇ 18:00~ 만찬

목 차

【제1주제】

- “한미 FTA 체결과 법적 쟁점”(최승환,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9
- 토론요지(김원경, 외교통상부 한미 FTA협상단 팀장) 7

【제2주제】

- “한미 FTA 체결과 법적 대응방안”(최원목,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35
- 토론요지(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63
- 연구제안 69

제 1 주 제

한-미 FTA의 법적 쟁점

최 승 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2장)

- 미국의 원목수출규제는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제한 조치임.
 - “산림자원의 보존 및 부족완화법”(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 Shortage Relief Act of 1990)에 근거, 미국은 서경 100도 서부에 위치한 미대륙서부 17개 주(Alaska 및 Hawaii 제외)의 연방 및 주(州)정부 소유림에서 벌채된 원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순수한 민간소유 산림에서 벌채된 원목은 수출을 허용함.
- 미국 Jones Act의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
 - 미국내 수상운송 규제: 미국상선법 제27장은 미국내 화물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서만 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관세철폐 및 감축에 있어서 형평성

-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117개 품목중 116개) 즉시 관세철폐, 미국은 즉시 철폐(40개 품목중 18개), 3년 이내(16개), 10년 이내(6개)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적용됨.
 -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스냅백’(snap-back) 제도가 도입됨.

- 농산품의 경우는?
 - 실질적 형평성/공정성 확보 문제
 - 이익의 불균형 초래

3. 농업(제3장)

- (1) 식량주권/농민을 포기한 협정인가?
 -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
- (2) 농산품 세이프가드
 - 주요품목(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등 30개 품목)의 수입이 일정물량(기준치) 이상으로 급증되면 추가관세 부과 가능.
 -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농산물세이프가드제도 유지?
 - 기준치 설정의 문제는?
 - 닭고기, 오렌지, 치즈, 분유/연유, 양파 등은 품목당 10년에 걸쳐 “한 차례에 한해” 일반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3) 유전자변형농산품 및 식품의 유통 및 수입규제 완화(양해각서)
 - 한국내 GMO 표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용도에 적합한 위해성평가, 불필요한 교역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채널 활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WTO 협정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입각하여 특정 미국산 GMO 제품의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겠는가?
 - GMO 제품의 의무표시제 시행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4. 섬유 및 의류 분야(제4장)

- 섬유원산지
 - 원사기준(yarn-forward rule): 협정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 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완제품을 재단 봉제해야만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원사기준은 WTO 원산지규정상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위반됨.
 - * 원사기준을 도축국기준(축산물)과 비교해 볼 때 일관성이 없는 미국에 유리한 기준임.

5. 의약품/의료기기(제5장)

- 보험수가를 규제할 정책결정권을 포기한 것인가?
 - 특허의약품(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고가 가격 책정 가능

6. 원산지규정(제6장)

- (1) 원산지규정의 적용원칙, 원산지규정 예외/특칙
- (2) 농산물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 신선 농산물, 닭고기
 - 도축국 기준 : 닭고기(완전생산기준)를 제외한 기타 육류
 - 기타 : 가공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 원산지기준과 수입가능성 여부는 별개임을 협정문에 명시함.

7.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선정(부속서 22-다)

- 원산지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역외가공지역이 갖는 법적 의미는?
- 개성공단제품이 역외가공지역에 선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에 선정될 가능성/개연성은?

(1) 역외가공지역에 관한 부속서

‘한-미 FTA’는 개성공단(Kaeseong Industrial Complex)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지역이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OPZ)에 지정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별도의 부속서에 마련함. 즉 한미 양국 대표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지역을 OPZ로 선정하게 되면, OPZ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표기되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게 됨. 여기서 일정한 기준이라 함은 ①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②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기준, 노동기준·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을 의미하는데(“이에 한정되지 않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북한지역의 일반적인 기준과 관련 국제 규범을 참조하여 상기 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함. 따라서 개성공단이 OPZ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최소한 상기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데 합의하여야 함.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양국 대표로 구성되며, 협정 발효후 1년 후 매년 또는 양국합의시 수시로 개최됨.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OPZ로 선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이 OPZ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OPZ의 생산품이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 OPZ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비율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여기서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원자재(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추가공정을 거친 후 가공물품을 당사국으로 재수입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하는데, 역외가공을 인정받은 지역을 OPZ라 함.

요컨대 개성공단이 OPZ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발효 1년 후에 구성·운영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지역이 최소한 상기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정에 한미 양국이 합의하여야 함.

(2) 역외가공지역의 선정요건

개성공단이 OPZ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성실히 준수하고, 북한 또한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역외가공지역의 지정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야 한다. 즉 개성공단이 OPZ로 지정됨으로써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아야 하며, 국제 및 남북 평화협력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기준, 노동기준·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최근 2007년 5월 10일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신속무역협상권(2007년 6월 30일 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관철시킨 ‘신통상정책’에 의하면 협상상대국에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기준과 7개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LO 협약상의 5가지 기준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가 포함된다.

8. 위생 및 검역규제(제8장)

(1) 광우병 감염 우려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2) 지역화 인정범위 문제

- 미국의 경우 주 단위로, 한국은 나라 전체를 한 단위로 함.

(3) SPS 정례위원회 설치

- 통상압력수단? 위원회의 기능: 위생 및 검역정책 간섭?

(4) GMO 농작물, 식품 수입규제 완화(양해각서)

(5) 동물건강 및 축산물 위생조치(양해각서)

-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조건과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9. 기술무역장벽(제9장)

(1) TBT위원회의 주요 기능: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TBT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 상대국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한 협의

(2) 표준 및 기술규정 제, 개정 과정의 투명성

- 한미양국의 이해관계자는 양국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모두 참여가능, 사전 정보 입수 및 의견 개진 가능.

10. 자동차(제2장 등)

(1) 자동차 관세철폐의 형평성 문제

-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친환경차(10년)를 제외한 대부분(117개 품목중 116개) 즉시 관세철폐, 미국은 즉시 철폐(40개 품목중 18개), 3년 이내(16개), 5년 이내(1개), 10년 이내(6개)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적용됨.
-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스냅백’(snap-back) 제도가 도입됨.

(2)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 변경

- 자동차세제에 관한 과세주권을 포기한 것인가?
- 특소세(차량가격 기준 부과):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자동차세(cc 기준 부과):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11. 무역구제(제10장)

○ 주요 타결내용

- 조사개시전 통보·협의제도(제10.7조 제3항)
-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제도(제10.7조 제4항)
-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제10.8조): 정보교환, 이행 감독
- 긴급수입제한조치(제10.1조): 동일한 상품에 1회를 초과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발동금지규정 신설

(1) 반덤핑조항의 양자분쟁 해결대상 제외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물량 합의 조항에 대하여는 한·미 FTA상의 양자 분쟁해결대상에서 제외함
-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반덤핑절차규정의 이행 여부를 상시 감독·점검하도록 함.
- WTO 분쟁해결절차 이용 가능!

(2)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기능 및 역할
 - ①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 ②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 ③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 ④ 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 ⑤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예: WTO 반덤핑 협상),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예: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 산업보조금 관행 등에 대하여 협의

(3) 양자 세이프가드제도 도입

-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다시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 조치“를 허용
 - 잠정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예: 수출자)의 의견*을 묻는 등 최소한의 적정 절차를 걸쳐 조사개시로부터 45일 이후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 예비 판정이 내려지기 전 최소 20일간 의견개진 기회 부여)
- 원칙적으로 협정발효후 10년 동안,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품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종료시까지 존속
-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유지가능하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금지

(4)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업피해판정시 누적평가에서 한국 제외 제안에 대해 미국이 거부.
-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판정 금지 제안에 대해 미국측이 거부.
- 만덤핑마진계산 등의 개선에 관한 한국측 제안을 미국측이 거부.

12. 투 자(제11장)

(1) 수용 및 보상

- 신속 적절 효과적 보상: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 투자자-국가간 소송의 허용범위 및 절차
- 투자자-국가간 소송의 허용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겠는가?

(3) 공공질서 유보

- 공공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의무에 반하는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함.
- 보건, 환경, 공서양속 등을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가?

13. 국경간 서비스무역(제12장)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NT)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최혜국대우(MFN)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 : 서비스 공급자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자연인 등)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단 상기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 조항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negative 방식”으로 적시 가능. 즉 Annex I(현재유보), II(미래유보)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가지 의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유보안의 작성 범위 (지방정부 조치 문제)
 - 미국의 주정부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는 현재유보 (Annex I)로 기재되어 ‘자유화 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 적용됨. 다만, 미국측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 모든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나열하는 대신 비구속적인 예시적 목록만 첨부토록 함(*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 아울러, 국내 서비스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미국 진출시 특정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경우 동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별도 부속서(12-다)로 규정함. 동 협의채널은 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비서비스 분야(광업·제조업·농수산업) 주정부 비합치조치에도 적용됨.
 - 연구과제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미국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의 실태 및 영향조사.
 - 국내전문직서비스의 단계적 개방
 -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회계사·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방. 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법무 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로 개방.
- < 법무서비스 >
- 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 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 3단계(발효 후 5년내) : 미국로펌과 국내로펌간 조인트벤처 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허용
- 공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국민연금, 보건, 탁아 등), 공공서비스 포괄유보
 - 공교육(유·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가능함을 확인.
 - 의료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계 법령상의 특례는 포괄 유보의 범위에서 제외.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규제수준을 유보(Annex I).

14. 정보통신서비스(제14장)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문제
 - 통신서비스가 가지는 국가안보적 측면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안전장치는?

15. 경쟁(제16장)

-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 공기업(state enterprise)을 설립하고 기존의 독점·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지정독점·공기업을 통해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정독점 및 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및 문제점:
- 지정독점에만 적용되는 의무 및 문제점:
- 지정독점에 관한 의무 중 ‘상업적 고려’란?:

16. 정부조달(제17장)

(1)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정부재정만으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시 정부조달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음. 학부모 부담부분은 정보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즉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
- 미국도 동일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외조항의 신설로 WTO 협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님.

(2) 민자사업(BOT)을 정부조달에 포함시킴

- 민자사업은 민자유치법상 이미 개방되어 있으므로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에 포함(국제입찰 실시를 의미)시키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음.
- 다만, 민자사업 관련 지역 중소기업보호 보호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에 포함하더라도 현행 지역중소 건설업자 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측 양허안에 중소기업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동 제도가 종전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1.7조) : 주무관청은 시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는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고시) 관련 외국 공급업자 입찰 참여 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7. 지적재산권(제18장)

- 저작권보호기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또는 창작) 이후 70년으로 연장.

(1) 일시적 복제

-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
 - ※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ies): 컴퓨터 사용시 RAM (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함(미국, 호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음)
- 다만,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설정하여 정당한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 일시적 복제권 등에 대한 예외규정은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함.

(2) 의약품관련 지재권(허가-특허 연계 등)

- 특허기간중 복제약의 판매금지에 따른 특허권자의 소송남용 문제.
-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는 복제약 판매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이행방안을 강구한다”에서 이행가능한 적절한 이행방안이란?

18. 노동 및 환경(제19장, 제20장)

(1) 노동

- 양국은 노동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상호 인정하되, ILO 핵심노동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동 협약 가입 및 관련 국내법 정비 의무?
 - ILO 핵심노동기준 준수가 법적 의무가 아닌 노력사항으로 되어 있어 협정 체결로 인해 ILO 협정을 비준하거나 ILO 기준에 맞게 국내법령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 '98 ILO 8개 핵심 협약 및 한·미 양국 가입 현황 (한국 4개, 미국 2개 가입)
 - 동일보수 협약(한),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금지 협약(한), 최저연령 협약(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한/미),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철폐 협약(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
 - 공중의견제출제도는 일방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국의 누구라도 다른 상대국의 접촉창구(CP: Contact Point)*에 시정 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로서 일단 공중의견이 제출되면 협정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검토와 함께 실상에 대한 정보와 처리결과를 공개하게 됨(*양 당사국의 접촉창구(CP)는 협정문 이행과 관련 양국의 공중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접수·검토해야 함).
 -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 감시 가능.

-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남용 문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소하거나 법적근거가 약하거나(frivolous or meritless) 반복적인 내용인 경우, 국내사법절차나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양국의 이해(interest)에 부합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부속서한에 규정함.
- 연구과제 : NAFTA 운영사례(2005년 말 현재 총 34건이 접수) 분석 필요

○ 노동분쟁해결절차

- 노동분쟁해결절차의 회부대상은 정부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서면협의요청 60일내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동 문제가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인 경우 노동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
- 독립적인 판정기구는 3명의 패널(양국전문가 1명, 제3국인 의장 1명)로 구성되며 동 패널 권고안 불이행시 연간 건당 1,500만불 이하의 위반과징금 부과 가능.
- 노동관련 분쟁해결절차는 일반상업분쟁해결절차에서의 패널결정 불이행시 무역제재나 금전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특징이 있음.
- 연구과제 : 미국이 체결한 FTA 상의 운영사례 분석.

(2) 환경

○ 대중참여 확대

- 환경보호에 관한 민간의 역할 증대.

- 사인은 한미 양국에 정보 미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서면입장 (submission) 제출 가능. 남용가능성?
- 연구과제 : 사인의 서면입장 제출 요건 및 절차는? 제한 가능성?
- 환경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
 -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위반하고 환경 Chapter상 협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함. 즉 ①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에 실패하고, ②한·미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 구성.
 - 단,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미 양국은 부속서한 교환을 통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이전에 분쟁사안을 규율하는 환경법과 동등한 법이 자국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토록 함으로써, 양국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한함.
 - 환경 Chapter의 여타 의무는 양국간 협의(Consultation) 대상이며,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이 아님.
- 연구과제 : 미국이 체결한 FTA상의 운영사례 분석.

19. 국가안보 예외규정(제23.2조)

-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허용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사업 분야에의 외국인직접 투자를 금지할 수 있겠는가?

- 한국기업의 대북반출 물자가 한미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한국기업의 특정물자의 대북반출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
- 연구과제 :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한 미국의 사례연구.

20. 분쟁해결절차(제22장)

(1) 개 관

- 절차규칙의 선택: WTO 또는 FTA 절차규칙을 선택할 수 있음.
-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는?
- 협정비위반제소의 범위는?
-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절차는?
- 주선, 조정 및 중개에 관한 조항의 부재:
- 공동위원회의 관할 범위는? (제22.8조) : 협의와 피널절차의 중간 단계
- 중재패널설치의 요건은? : 공동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 이의신청제도?
- 패널심리의 공개 문제:
- 전문적 조언:
- 패널보고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합리적 이행기간의 결정방식?
- 사적당사자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2) 자동차 신속분쟁 해결절차

-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1/2 수준으로 기간 단축(총 14개월 내외→7개월 미만)
 - * ①일반 양자간 협의 생략, ②Joint Committee 협의 60일→ 30일, ③패널설치후 최초보고서 제출 180일 → 120일, ④최종보고서 제출 45일→ 21일
- 이때 패널이 특정 조치가 1)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침해하고 2)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materially affecting sale, purchase, distribution...”) 판정할 경우, “승용차”에 한정해 특혜관세 이전 관세(미측 2.5%, 우리측 8%)로 복귀 가능(snap-back). 단 관세율 (미측 25%, 우리측 10%)이 높아 영향이 큰 트럭은 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특별절차는 한미 양국간에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됨.

토론요지(녹취록)

김원경(외교통상부 한미 FTA협상단 팀장)

먼저 총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시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분들과는 다른 관점이 있음. 협상이란건 100대 1 또는 99대 1이란건 있을 수 없음. 51대 49정도로 생각하고 협상에 임함. 미국이라는 거대국가와 협상하는데 나름대로 제약이 있음. 각론적으로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에 대해 미국의 원목수출규제가 WTO 협정상 정당화 될 수 없는 무역제한조치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GATT 20조에 있는 G나 J를 가지고 정당화 하고 있는데 G같은 경우에는 “유한한 천연자원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조치다” 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고, J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같은 것으로 정당화 하고 있음. 물론 처음부터 WTO협정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조치니 없애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근거조항들을 들면서 WTO는 물론 다른 FTA에서도 정당화 받았다고 주장함. 물론 미국이 다른 FTA에서도 다 정당화 받은 이러한 예외조치를 다 없앨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음. 사실 내심으로 기본적으로 공산품 쪽에는 미국이 즉시철폐로 거의 다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에 하였으나 공산품 쪽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인삼물쪽에 있음. 특히 합판이나 파티클 보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장기철폐로 가져가야겠다는 업계의 요구가 강하게 있었음. 사실 원목수출 규제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강력히 주장은 했으나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10년 장기철폐로 유도를 하면서 타결을 한 부분임.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우리

가 농산물이 민감한 것처럼 미국은 자동차가 가장 민감한 사항. 미국 자동차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동차 무역에 교역 불균형이 깔려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 우리는 1년에 70만대 정도를 수출하고 있고 미국자동차는 5천대 정도를 수입하고 있음.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자동차 관세를 즉시철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빠른 시일에 즉시철폐를 하자는 것이 우리측 주장이었음. 미국은 마지막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쪽에서 받아들인 것이 소위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세제개편과 지적인 대로 분쟁해결에 대한 스냅백 제도를 받아들면서 우리 쪽에서 제일 중요시 했던 1500cc에서 3000cc 승용차에 대해 즉시철폐를 하는걸로 결론을 내렸음. 우리쪽에서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부분은 1500cc에서 3000cc사이의 승용차는 관세 철폐를 하면 제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점을 두었음. 미국도 마찬가지로 봤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했는데 비관세장벽, 스냅백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된 자동차품목을 즉시철폐로 끌어내렸음.

또 하나 중점을 뒀던 부분이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이었음. 자동차 부품은 즉시철폐를 하도록, 타이어는 5년 철폐로 합의가 되었음. 타이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타이어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업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중점을 뒀음. 자동차 부품같은 경우 알라바마주와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부품공장이 있는데 알라바마는 현재 가동중이고 조지아주는 2009년도에 완공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을 즉시철폐로 가지 않으면 업체들이 나가서 현지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조립해서 판매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게 됨.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협상목표로 삼았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익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 그러나 우리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

드릴수 있겠음.

스냅백 제도는 좀 전에 언급했던 부분들을 얻어 내기 위해,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나가야겠다는 것이 미국측의 입장이었음. 자동차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를 좀 강화하겠다는 초안은 우리 쪽에서 먼저 냈음. 미국측에서는 스냅백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력한걸 준비해 왔으나 조정을 통해 스냅백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세가 2.5%에 불과한 승용차 분야에만 스냅백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음. 다만 협정문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해서 스냅백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협정문에 대한 위반과 협정문에 대한 위반이 양국간 교역에 영향을 줘야 한다면 두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스냅백을 하도록 되어 있음.

농업 역시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고 미국사람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최대 쟁점이 되리라고 예상했던 부분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도 농산물 수입가제한(양념채소 부분)을 유지함.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련된 부분은 양해각서의 형태가 아닌 공문식으로 처리 되었음.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미국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신약에 대한 최저가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음. 만약 그것이 한미간의 합의가 돼서 FTA의 일부가 됐다면 상당부분 우리가 약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포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음. 그러나 연결해서 무역구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다. 초기에 2006년도에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이 무역구제(소위 누적평가) 부분이었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음. 그 이유는 미국측이 TPA에 무역구제 관련한 내용을 건드리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결국은 미국의 무역구제 관련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나왔음. 그래서 말하자면 합의가 된것이 의

약품 쪽의 최저약가를 보장하는 내용, 그것이 의약품 분야의 미국의 핵심요구사항이었음. 무역구제가 우리의 핵심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최저의약가를 포기하고 무역구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났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엔 지적하신 대로 정치적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었음. 당초에 기대했던 것은 아세안이나 싱가포르의 FTA처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바로 특혜관세를 인정받는걸로 추진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런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절차를 한미 FTA 협정문 안에 확보한다는 전략이었음. 그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는 상당히 앞으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하지만 당장 개성공단에 대해 OPG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님. 하지만 협정이 발효되고 나면 1년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밖에 없고 그 논의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동차세제에 대한 과세조건을 포기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음. 챕터 2의 12.3조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배기량 기준과세에 대한 것임. 배기량 기준과제라는 것은 한미간 또는 한 EU간 오래된 통상현안임. 한국이 외산차 수입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큰 배기량의 차량에 대해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임. 이것은 오래전부터 한미간 통상협상의 대상이 됐던 부분임.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배기량 기준과세 제도를 더 확대할 생각은 없음. 그에 따라 배기량 기준과세는 더 이상 차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관련조항의 내용임. 기타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세금을 높이거나 내리거나, 새로운 세제를 도입을 하는 것에 지장은 없다고 할 수 있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서 ISD절차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

라의 공공정책이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기에 NX11-b와 NX11-f를 미국측과 합의해서 마련했음. 나름대로 이런 조치로 인해 공공정책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미국측과 공유했음. 사실 공공정책이나 기본권을 훼손한다는 것은 투자챕터에 있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투자챕터의 핵심내용은 결국엔 NT하고 수용조항임. NT는 내국민대우라는 조항이고 수용이라는 것은 정부가 사유재산을 수용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임. 이런 두가지 전제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공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투자챕터가 방해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함. 그러나 NX11-b와 NX11-f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음.

공공질서 유보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보건 따위가 NT전제하에 할 경우엔 문제가 없음. 만약 우리가 공서양속을 문제로 외국인 투자는 제한을 하면서 내국민 투자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됨. 공서양속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포르노잡지의 수입이나 도박의 허용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국민에 대해서 도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공서양속을 이유로 조치를 취하면서 내국민은 다 하면서 외국인은 못한다고 할 일은 전무할 것임.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유보안 작성범위와 관련해서 'Ratchet mechanism'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엄격한 조항임.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를 완화시켰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49%로 여전히 묶여 있지만 간접투자를 하는 것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허용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간접투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치하고 그 법인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소유하는 제도, 말하자면 지주회사라고 보면 되겠음. 통신서비스에 대해서 갖고 있던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접투자를 통해 핵심적인 자산이나 사람을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한은 어느정도 자유화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음.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한을 뒀음. 결국은 국가안보적 측면이랑 공익적 성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는 우선부분에서는 KT, 무선부분에서는 SKT가 핵심적인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음. 그래서 간접투자를 완화하면서도 이 KT와 SKT에 대해서는 완화하지 않았음. 이것이 공익적 성격을 반영한 부분임.

정부조달 부분에서는 학교급식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한국에서 정부조달로 학교급식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음. 그러다 보니 지난번 법원에서 판례가 나온것도 정부조달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농산물만 쓰라고 하는 것이 GATT 위반이다 라고 된 것임. 앞으로 정부조달로 학교급식을 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음. 다만 앞으로 학교급식을 정부가 많이 컨트롤 하게 되면 그때는 국산농산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은 마련했다고 볼 것임. WTO형법상 적법을 인정받은 것도 물론 아님. WTO에서는 정부조달 관련해서 협상이 계속 되고 있음. 판단하기에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WTO차원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것으로 보고 있음.

제 2 주 제

한-미FTA 체결과 법적 대응방안 - 의약품·지재권 분야의 예를 중심으로

최 원 목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I.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한 시장접근 개선 차원의 협정이 아니다. 선진 규범을 제도화하여 우리 기업의 영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출위주의 단기 산업성장 전략을 위주로 해외시장에만 매달려 왔다. 그러나 이제 4%대의 고용 없는 성장에 머물고 있고 3.7%대로 오르고 있는 실업률은 단기전략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수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내적인 비효율성의 제거와 체질 개선이 핵심 과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을 선택했던 것이고, 개방과 제도개선을 통해 대내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으려 했다. 이것은 우리 기업입장에서는 그만큼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영업 체질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미FTA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 법규를 상당수 제·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조정 및 국내법적 대응을 통한 새로운 제도화의 필요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가 의약품 및 지재권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별로 한-미FTA 협상의 주요 결과를 분석·요약하고, 그에 따른 국내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FTA와 국내법적 대응의 기본 원칙

FTA는 국가간의 약속을 정한 조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해 의무사항이 발생한다. 즉, FTA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가 FTA당사국 정부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FTA에는 적극적 의무(positive obligation)와 소극적 의무(prohibitive obligation)가 규정되어 있다. 적극적 의무란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할 의무를 말하며, 소극적 의무란 이를 행하지 않을 금지 의무를 말한다.

소극적 의무의 예로는 관세양허의무(일정한 양허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의무), 관세의 단계적 철폐의무(관세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이행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설정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의무), 비차별대우의무("like products", "like services/service providers", "like IPR holders" 간에 차별대우를 행하지 않을 의무),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대한 유보의무(서비스 양허표상에 기재된 유보사항 이외에는 교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의무는 기존 국내법상의 관련 규정이 이러한 금지의무에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돌되는 법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기존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FTA상의 금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존 법규의 금지 범위내에 FTA상의 금지범위가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FTA상의 금지의무는 이미 달성된 것이므로 다른 조항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국내법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FTA상에 교육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학교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이 유보되어 있다면, 외국 학교의 설립에 대한 조건으로 비영리법인요건 이외에 어떠한 요건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국내법으로 외국 학교설립에 대

한 완전자유화가 달성되어 있다면 FTA체결로 인해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 의무는 새로운 약속사항을 국내법으로 규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일시적 저장 복제권을 인정하도록 국내법에 규정할 의무, 저작자 사후 최소한 7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국내법에 규정할 의무, 의약품 허가시에 특허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여 허가조치할 것을 국내법으로 규정할 의무 등이다. 이러한 적극적 의무 부과 방식은 대개 기존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법 규정과 충돌되는 사항을 새로이 규정토록 의무화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적극적 의무 사항들은 국내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야기시키게 된다. 물론 이미 국내법에 반영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향후에 당사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FTA상에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미FTA상의 의약품특허권보유자가 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일정기간 자료독점권을 부여토록 규정할 의무는 이미 국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추가적인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이러한 의무가 한-미FTA에 규정되게 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가 일방적 필요에 의해 자료독점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수십년간의 통상마찰을 겪어 왔으며 협상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해왔다. 이러한 통상협상의 결과를 한-미FTA라는 종합적 통상조약에 집대성하여 명문화하는 의미에서 한-미FTA에 적극적 의무가 부과된 경우도 많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FTA는 우리 헌법 제6조상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FTA상의 각종 의무의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이 없더라도 FTA자체가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국내법규의

제·개정이 FTA의 효력발생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볼 수는 없다. 즉, 비록 FTA상의 의무와 충돌되는 국내법규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FTA는 하나의 신법(新法)으로서 상호 충돌되는 범위 내에서 구법(舊法)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FTA상의 의무사항의 국내적 적용은 보장되게 된다. 그러나, 법률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의 상세한 규정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위내에서 국내법률과 충돌되는 FTA규정의 구체적 시행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FTA와 기존 국내법률간의 충돌이나 괴리를 제거하도록 국내입법이 정비되어야 FTA 의무사항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FTA상의 각종 양허표 및 구체적인 절차규칙 등은 그 내용과 성격상 바로 실무관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별도의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FTA와 국내법규간의 충돌해결 차원과는 별도로 FTA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로 인해 국내 대응입법을 마련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즉, FTA로 인한 개방의 결과 피해를 입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피해의 효과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대응입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의 입법은 단기적인 피해보상차원이 아니라 FTA 본래의 의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제고에 합치되도록 시행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의약품, 지재권, 분쟁해결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법적 대응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응입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Ⅲ. 의약품 분야

1. 건강보험 제도 관련 사항

한-미FTA 의약품분야 협상의 결과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이 합의되었는바, 이는 주로 미측이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우리측의 수정요구가 절충된 결과이다.

가. 차별 금지와 적절한 특허약품 가치 인정

첫째, 한-미 양측은 FTA협정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중앙정부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호제도 및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가 한-미 FTA의 의약품 장(chapter)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규정하였다.¹⁾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보험급여목록에의 등재 및 보험약가 산정에 필요한 절차·규칙·기준 등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산 의약품이 외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²⁾ 또한 각국이 서로 다른 약가결정방식을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의약품의 보험약가 결정은 경쟁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경쟁체계와 다른 절차와 규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특허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appropriately recognize)”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모든 국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 system)로서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1) 한-미FTA 최종협정문(2007.6.30. 워싱턴에서 서명) 제5.2조.

<http://www.mofat.go.kr/mofat/fta/eng_0707/eng_list.htm>

2)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5.2조 (a).

3)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5.2조 (b).

있다. 따라서, 경쟁적 시장가격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에 보험약가 결정시 경쟁시장 가격을 적용할 의무는 없고 그 대신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의미는 단일한 기준과 방법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의약품 가격은 기존에는 선진국 시장가격을 보험약가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2006년 12월)으로 외국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물경제성 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 가격 협상에 의해 보험약가가 정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약가가 산정되게 되는바, 이러한 약가 산정이 “특허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문안과 합치되는지 여부가 문제시될 수 있다. 판단컨대, "적절히(appropriately)"라는 단어의 의미가 애매 모호한 측면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위 합의 내용은 반드시 특허의약품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객관적 가격을 모두 인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측에서 약가결정시에 연구개발비 등을 참조하면서도 해당 의약품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제도의 본질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치 않고, 위 합의로 인해 우리가 향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운영함에 있어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미FTA는 비교약물보다 높은 약가 신청, 새로운 안전성·유효성에 기초한 약가인상 신청, 추가 적응증 급여 확대 신청

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이러한 종류의 신청 허용은 우리 현행 규정상 이미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⁵⁾

나. 규제의 절차적 투명성 보장

한-미FTA는 보험급여 결정, 보험가격 결정 및 식약청의 허가과 같은 규제를 취하는데 있어, 도입 예정인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포(입법 예고)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즉, 의약품·의료기기 약가 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사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법·규정 등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상대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로서 추가적인 국내 이행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 관련 사항들이 한-미간의 국가적 약속사항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우리측의 미준수시 양국간의 통상분쟁으로 비화되게 되므로, 국내에서의 보다 투명한 행정집행을 위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행정규제 관행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독립적 검토절차

한-미FTA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의 등재 여부 및 급여액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약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독립적 검토(independent review)” 절차를 통해 재검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⁷⁾ 독립적 검토의 구체적 사항은 부속 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요지는 독립적 검토기구 및 검토위원은 약가 결정 및 급여

4)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5.2조 (b)/ (c) 참조.

5)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제3조.

6)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5.3조.

7)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5.3조 5항 (e).

를 결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검토자는 해당 검토 결과로부터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검토(review)”라는 단어의 다의적 의미상 보험 등재여부나 약가와 관련한 원결정을 번복할 권한을 지니는 일종의 상소나 재심절차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원심번복’(appeal) 기능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i) 원심번복 권한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미측의 주장이 결국 합의문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 (ii) 동일한 단어가 수용된 미-호주FTA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호주가 원심번복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iii) “appea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점, (iv) 원심번복과 같은 중대한 기능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점, 그리고 (v)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원심번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 검토 결과가 원심의 결정과 상치(불합치)되는 경우에도 원심의 결정을 의무적(강제적)으로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을 결정한 기구에 검토결과를 환송하게 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독립적 검토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호주가 운영 중인 방식을 참고하여 국내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그에 따른 대응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호주정부가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는 정부가 독립적 검토기구를 운영할 위원장(Convenor) 1인을 지명하고 지명된 위원장이 관련 전문가를 모아 검토자 인력 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측은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인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여 이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적 검토과정의 마련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국내외 제약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국내 제약

8) 한-미FTA 최종협정문 Confirmation letter(Independent Review Process).

회사 입장에서는 비록 당국의 원심판정의 번복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을지라도, 검토절차를 요청함으로써 당국 스스로 결정을 변경하거나 재고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총 평

한-미FTA 의약품 협상의 성과로는 우선 협상 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까지 지목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의 중단 압력을 우리측이 끝까지 물리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도입(2006.12.29부터)을 관철시킨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이란 품질과 효과가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적정량 복용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 대신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비용 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기등재된 신약과 물리·화학·생물학적으로 동등하므로 별도의 경제성 평가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성분 신약이 등재된 경우 최초 신약 가격의 최고 68%까지 약가를 인정받고 있다.

한-미FTA협상의 결과, 이러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유지하는 핵심골격인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규정이 배제됨으로써 우리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제는 우리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 한-미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이제 특허약품 가치의 적절한 인정을 위한 약가 결정의 관행을 수립해나가고, 독립적 검토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대응입법이 행해져야할 것이다.

2. 양국간의 규제협력 및 위원회 설치

다음으로 주로 우리측이 제기한 이슈인 양국간의 규제협력 방안이 규정되었다. 당초 우리측은 한-미FTA상에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의 시판승인 기준 등을 한-미 양국간 상호인정(MRA)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측이 유사생물의약품(bioenerics) 약식 허가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GMP란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말하며, GLP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험·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미측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미행정부의 협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을 이유로 거절 입장을 견지하였는바, 양측이 입장을 절충한 결과 의무적 협상개시가 아닌 상호 협의조항이 탄생되게 되었다. 즉, 향후 양측은 GMP, GLP 및 복제의약품의 시판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수 있고,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규정되게 된 것이다.⁹⁾

이는 한-미FTA의 결과 양국간 규제 협력강화(GMP 등 상호인정 추진)를 위한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이를 위한 협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향후 의약품 표준의 선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상

9)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5.6조.

대국 정부의 GMP, GLP심사 결과를 상호인정하게 되면 의약품 수출 시 수입국 허가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실태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미국내 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해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착실한 준비가 요망된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게 되므로 의약품의 대미수출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러한 기회는 더욱 확대되게 된다. 그러나, 의약품 수출에 요구되는 각종 품질 및 안전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수출이 활발해지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완제의약품의 수출이 계속 증가세에 있으나, 세계 제약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완제수출 비중은 6%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시장과 EU시장에 완제의약품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급이나 EU-GMP급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품질향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과 더불어 이러한 방침에 순응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GMP를 cGMP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업체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식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GMP 국제조화추진계획(2010.1 완료예정)과도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의약품에 대한 GMP 수준을 cGMP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내 준비작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무관하게 진행중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현행 GMP 수준을 cGMP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07.4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결국 향후 우리측이 한-미간 의약품 상호인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수행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미국의 선진수준에 걸 맞는 의약품 분야 표준들이 자리잡게 될 때, 양국간의 MRA는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제도 개선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각종 국내적 대응입법을 통해 제약산업 표준 upgrade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에서 양측이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타 양국간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정부 관료만으로 구성된다.¹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통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게 되며, 산하에 설치되는 기술 작업반의 활동을 통해 우리측 관심 사항인 규제 협력(GMP, GLP 및 제네릭 의약품 허가 상호인정) 방안의 본격적인 추진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향후 적절한 수준의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을 통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GMP, GLP상호인정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의약품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의약품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 및 국내 대응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료독점

한-미FTA는 자료독점권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최초로 받은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작성된 것일 경우, 최소 5년 동안 이를 기초로 동일 또는 유사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이는 오리지널제품 허가 후 최소한 5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최초 개발자가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기초로 후발신청자가 동일 또는 유사 의약품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5.7조.

11)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9조 1항.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WTO TRIPS협정 제39조 제3항의 규정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허가당국에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기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일정기간 동안 후발신청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EFTA FTA에도 이러한 자료보호 규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¹²⁾ 국내법적으로도 시행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공개·미공개 자료 모두)를 6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동 기간내 최초 개발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약품(신규의약품과 활성골격이 같은 제품으로서, 염변경, 에스테르, 킬레이트, 이성질체, 제형변경, 함량 증감, 투여경로 변경 의약품 포함)을 허가 신청하는 후발 신청자는 이 자료를 인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¹³⁾ 따라서, 한-미FTA가 요구하는 최소기준인 5년을 초과하는 6년간의 자료독점이 국내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국내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나. 허가-특허 연계

한-미FTA의 결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는 오리지널제품의 특허기간 중 원개발자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후발신청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제품 또는 허가받은 용도를 대상으로 한 특허가

12) 한·EFTA FTA Annex III Article 3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한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위해 허가당국에 제출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 미공개시험 및 기타자료는 당사국 법령에 정한 기간동안 후발업자가 이를 기초로 허가받지 못 한다.”)

13)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9항(식약청 고시 2007-30, '07.5.25) (“제3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허가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범위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허가자 또는 원개발사로부터 자료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는 오리지널제품에 대하여, 후발신청자가 원개발자의 자료를 기초로 허가를 신청하면, 원개발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⁴⁾ 당초 미측은 특허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허가절차의 일정기간 동안 자동정지 의무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자동정지제도는 수용되지 못하고 각 당사국측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방식으로 판매 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양측은 한-미FTA 추가협상(2007년 6월)을 통해 합의한 결과, 제네릭 품목의 신청사실에 대한 “통지”는 협정발표시점부터 이행하여야 하나,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기간 중에 신청된 제네릭의약품의 “시판방지조치”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에 합의하였다.¹⁵⁾ 즉, 허가-특허 연계를 위한 시판방지조치를 우리측이 취하지 않을지라도 미측은 한-미FTA 발효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은 FTA상의 분쟁패널 절차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측이 허가-특허 연계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일종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은 것과 같은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수용으로 인해 우리 당국은 의약품 시판을 허가할 때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특허권침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본안 소송 및 법원의 가처분 판결 등의 국내적으로 가용한 제도를 활용하여 의약품 특허권 침해를 방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대략 9개월 정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의 저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네릭의 시장진입이 저해된다는 것은 제네릭 생산 위주의 국내 제약회사에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아

14)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9조 4항.

15) 한-미FTA 최종협정문 Confirmation letter (Dispute Settlement Regarding Patent Linkage).

올러 특허약의 독점기간을 다소나마 강화시키게 되므로 약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우리측은 이 제도 도입에 있어 18개월 동안의 사실상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정 발효 후 1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내 제약회사들은 특허-허가 연계제도가 완전히 도입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취해 나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시판”금지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심사”(생동성시험수행,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절차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에 출시되는 복제의약품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오리지널제품의 특허기간 중 오리지널제품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오리지널제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오리지널 특허권자가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후발의약품이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현행 특허법상으로도 위반사항이어서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개발자의 특허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특허로 판명되는 경우 정당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일정 정도 제네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연평균 약 350~8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의할 점은 물질특허와 제품 사용방법에 관한 특허만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며, 제법 특허 및 포장특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향후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행

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특허권자의 소송 남발 방지 대책 및 부실풍허에 도전하는 제네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입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허가시 지연기간 보상

한-미FTA에서는 의약품 당국의 의약품 시판 허가시 발생한 지연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 연장제도가 규정되었다. 즉, 의약품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해, 의약품 허가절차시 발생한 “부당한 특허기간의 감축분”(unreasonable curtailment of the effective patent term)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된 것이다.¹⁶⁾

우리나라는 이미 의약품등의 판매승인절차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특허법에 반영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즉, 특허법 제89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정한 발명의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명으로는 의약품과 농약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¹⁷⁾ 따라서 한-미FTA의 체결로 인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다.

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의 준수

한-미FTA에는 WTO TRIPS협정과 공중보건선언(도하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이 도하선언 및 그에 따른 TRIPS협정의 개정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 조치를 취할 권리는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향후 WTO TRIPS협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TRIPS조항과 한-미

16)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8조 6항 (b).

17) 특허법 시행령 제7조.

FTA 지재권 조항이 상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FTA 협정문이 개정된 TRIPS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국이 신속히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⁸⁾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르면 에이즈·말라리아 등 개도국의 심각한 질병 창궐로 인한 위급상황시 WTO회원국이 TRIPS협정에도 불구하고 특권자의 허여 없이 특허의약품을 강제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¹⁹⁾

우리 특허법 제106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이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²⁰⁾ 이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광범위한 사유를 강제실시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국내법적으로 이행할 태세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기타 사항

이밖에도 한-미FTA는 제약회사의 자사 홈페이지 광고 허용, 제약회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 규제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²¹⁾ 현재 우리나라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광고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²²⁾ 이에 따라 약사법시행규칙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전문의약품

18)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11조 및 제18.9조 제3항.

19) WT/MIN(01)/DEC/2 (20 November 2001).

20) 특허법 제107조.

21)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5.4조 및 제5.5조.

22) 약사법 제63조.

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대중광고(전문적·학술적 목적의 광고 제외)를 금지하고 있다.²³⁾ 식약청고시인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및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은 이를 확인하고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제약회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는 대중광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현재 식약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제약회사가 자사 생산 전문의약품을 품목 허가 범위내에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는 행위는 대중광고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로 인해 별도의 입법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제약회사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광고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백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제약회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 개선 문제는 우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는 무분별한 의약품 등재와 비현실적인 약가 산정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과잉 처방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동안 어떤 약이든 의약품 허가를 받으면 보험에 등재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효능은 떨어지고 가격만 비싼 의약품이 만성적으로 과잉 처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다른 경쟁 품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낮은 가격으로 제품 등재만 해놓고 실제로는 공급하지 않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폭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구조적 결탁을 통해 자사의 의약품이 구조적으로 처방되도록 하는 영업관행에 대해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각종 법규(공정거래법, 형법, 의료법, 약사법²⁴⁾)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이행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료

23)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

24) 형법 제357조 배임죄, 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고객유인행위, 의료법 제53조(품위손상행위), 21조(금품수수행위), 약사법 제71조(윤리기준 위반),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해당될 여지가 있다.

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등 의약품 부조리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가능하며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이행 및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IV. 지재권분야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은 미측의 거센 지재권 보호 강화 공세에 맞서 우리측이 얼마나 방어해내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된 분야이다. 실제 미국은 그간 체결한 FTA에서 지재권분야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상대국에 정형화된 협정문안을 제시하여 이를 거의 예외 없이 관철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한-미FTA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측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협정문안에 반영된 것이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미측 요구가 전적으로 수용되거나 수정되어 협정에 반영된 사항들을 대표적인 지재권의 종류인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이들의 집행측면으로 구분하여 요약하고, 그 각각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저작권 분야

한-미FTA 지재권협상의 결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첫째,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²⁵⁾ 다만, 이러한 연장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²⁶⁾ 당초 미측은 저작자가 단체이거나 음반제작자의 경우는 발행 후 95년, 창작 후 120년까지 보호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고 이 경우에도 저작자가 사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70년 보호(저작물 발행 또는 창작기준)로 합의되었다.²⁷⁾ 이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상의 50년

25)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4조 4항 (a).

26)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12조 2항.

27)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4조 4항 (b).

보호조항은 2년 유예기간 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²⁸⁾

둘째, 일시적 저장 복제권이 인정되었다.²⁹⁾ 이는 서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이용할 때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자의 통제권을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도 브라우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통제권이 인정된 것이다. 일시적 복제가 디지털 환경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저작물 이용행위인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이용금지, 이용료 징수 등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단, 일시적 복제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공정이용(fair use)’은 허용된다.³⁰⁾ 현재 우리 저작권법상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한정되므로,³¹⁾ 일시적 복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²⁾ 따라서 앞으로 유예기간동안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일시적 복제의 개념을 포함한 복제의 정의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공정이용에 관한 예외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작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접근통제적 기술조치 및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를 제거 또는 우회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불법화되게 되었다.³³⁾ 따라서, 이제는 컴퓨터

28) 저작권법 제3관 참조.

29)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4조 1항.

30) 한-미FTA 최종협정문 각주 11 참조.

31) 저작권법 제2조 22호.

32) 한편, Berne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및 WPPT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의 경우에는 저작자나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식으로든(in any manner or form)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시적 복제 개념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다. Berne협약 제9조, WPPT 제7조.

33)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4조 7항 (a), 접근통제(technological measure that controls access) 뿐만 아니라 이용통제도 포함하고 있음을 주의. (ii) 및 (ii) 참조.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우회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일정한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동일한 지역코드가 내장된 DVD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도록 DVD타이틀을 제작한 경우,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DVD타이틀을 재생할 수 있도록 다지역(multi-region) 플레이어를 제조하여 판매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되게 된다. 단,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며,³⁴⁾ 비영리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행하는 기술적 조치 우회행위, 교육목적의 행위, 공공목적의 방송을 위한 행위 등은 침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³⁵⁾ 아울러 향후 기술의 발달로 위 예외사유와 비슷한 성질의 추가적인 예외사유가 발생시 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후협약의 장치를 마련한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³⁶⁾ 현재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P) 및 실연·음반조약(WPPT)에서는 “체약국은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것(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이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한 뒤,³⁸⁾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

34)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4조 7항 (a) (i).

35)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4조 7항 (d).

36) 한-미FTA 최종협정문 각주 14.

37) WCT 제11조, WPPT 제18조.

38) 저작권법 제2조 28호.

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 권리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수단 제공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³⁹⁾ 이처럼 우리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의 정의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것이 이용통제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접근통제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해석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에 접근통제 조치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 법 문안 하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좀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등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미FTA의 결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⁴⁰⁾ 즉, 다음, 네이버 등의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의 신상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를 개정하는 등 추가적인 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특허권 분야

한-미FTA의 결과 특허권의 경우도 보호의 정도가 다소 강화되었다. 우선, 특허발명의 공개 후에도 출원 가능한 기간(공지예외 적용기간)이 12개월로 규정되었다.⁴¹⁾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이란 특

39) 저작권법 제124조 2항.

40)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10조 30항 (b) (ix) 및 Confirmation letter (Internet Service Provider).

41)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8조 7항 (b).

허출원을 하기 전에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발명자 자신이 한 공개행위에 의해 특허를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을 하면 공지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발명자의 경우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발명관련 정보를 사전 공지 했을 지라도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특허법은 공지예외 적용기간으로 6개월을 규정하고 있다.⁴²⁾ 이제는 특허법을 개정하여 이 기간을 12개월로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특허출원의 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미FTA에서는 특허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특허불실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⁴³⁾ 따라서, 우리 특허법상 특허 등록 후 3년 이상 불실시에 의한 강제실시권 허여 후 다시 2년 이상 계속 불실시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⁴⁴⁾를 특허법 개정을 통해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 제도가 활용되어온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미측 요구를 우리가 수용한 것이다.

또한 한-미FTA로 인해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보상 연장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특허청의 특허심사 절차가 표준 심사기간(출원 후 4년과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을 기준)보다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해 감축된 특허기간 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⁴⁵⁾ 불합리한 특허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소나마 특허기간 연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로열티 수지가 악화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

42) 특허법 제30조 1항.

43)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8조 4항.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patent may be revoked only on grounds that would have justified a refusal to grant the patent. A Party may also provide that fraud, misrepresentation, or inequitable conduct may be the basis for revoking a patent or holding a patent unenforceable...)

44) 특허법 제116조 1항.

45)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8조 6항 (a).

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본질은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이라는 표준 등록기간을 설정해두고 이 기간보다 지연된 기간만큼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그 시행으로 인해 우리 특허심사 및 등록기간이 표준화되고 예측가능성이 부여되어 신속한 특허출원 처리 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미국 특허권자는 물론 국내 특허권자 공히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이 전반적으로 단축(2006년 말 평균 9.8개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위 표준심사 기간을 초과하여 심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예측된다.

3. 상표권 분야

상표권의 경우도 그 대상 및 보호의 정도가 강화되었다. 우선 소리·냄새 상표가 인정되게 되었다.⁴⁶⁾ 따라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및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상표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⁴⁷⁾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텔사의 효과음을 들 수 있고,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은 냄새상표의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한-미FTA는 상표의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⁴⁸⁾ 그동안 우리 상표법은 공시를 통한 제3자 보호를 위해 상표권자와 사용권자간의 전용사용권 계약과는 별도로 이 계약내용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왔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46)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2조 1항.

47) 상표법 제2조 1항 1호.

48)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2조 13항.

49) 상표법 제56조 1항 2호.

고,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등록요건을 폐지하는 추세이며, 상표권은 권리자의 자유로운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을 반영하여, 한-미 FTA에서 전용사용권 등록요건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표 사용권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상표 사용권자의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상표법을 개정하여 등록요건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⁵⁰⁾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바, 모든 상표는 이 표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마크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여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증명표장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재권 집행 분야

한-미FTA의 결과 지재권 집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저작권의 경우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를 적용토록 했으며,⁵¹⁾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미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목적의 ‘법정손해배상제도’(pre-established damages)의 도입이 의무화되었다.⁵²⁾ 법정손해배상제이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정해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상표 침해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실손해배상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이를

50)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2조 2항.

51)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10조 26항.

52) 한-미FTA 최종협정문 제18.10조 6항.

선택할 수 있어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측은 별도 서한 형태의 합의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불법 복제와 유통이 행해지고 있는 관행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해당 사이트의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것을 미측에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발표하는 한편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것에 합의하였다.⁵³⁾ 또한 대학가의 불법 복제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와 홍보를 시행할 것도 약속하였다.⁵⁴⁾

지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여 창작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재권 집행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은 지재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국내법 제도에서 생소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관련 법규의 정비와 효과적 집행을 통해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느냐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또한 대학가나 인터넷 상에 만연된 불법 복제의 관행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단계적으로 근절시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향후 한-미 통상관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V. 결 론

FTA가 주는 최대의 혜택은 단순한 교역증대로 인한 이득을 넘어서, 국내규제 개혁 및 산업의 구조조정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FTA 제도화 관련 협상인 의약품 및 지재권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결과는 국내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단기적 피해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제도의 개혁과 국내산업의 올바른

53) 한-미FTA 최종협정문 Confirmation letter (Online Piracy Prevention).

54) 한-미FTA 최종협정문 Confirmation letter (Promoting Protection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Copyrighted works on University Campuses).

방향설정을 위한 계기를 설정한 측면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약제화적정화방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협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의 국내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비윤리적 영업관행과 낮은 연구개발투자 및 복제약 위주 생산방식의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권리보호 및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경제도 지식재산권 수출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명백히 제시한 것이다.

우리 국내 산업은 이러한 구조 조정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 장기적인 성장의 유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신약개발과 지식재산권 기반 경제로 한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미FTA가 부여하는 제도화의 이익을 수용하여 꾸준한 대내적 구조조정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취지에 맞추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국내법규의 정비와 대응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요지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먼저 한미 FTA체결 실무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어, 많은 성과를 내신 최원목 교수님의 충실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FTA에 대한 실무 지식과 많은 연구성과를 갖고 계신 교수님의 발표에 제가 커멘트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몇가지 여쭙는 것으로 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의 FTA 연구분과를 운영하면서 미국의 한미 FTA분석 자료를 많이 접했습니다. 연구 중에 하나 느낀 점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접근 방법이 많은 부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미 FTA체결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미국 산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논의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중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견제 문제까지도 언급하면서 한미 FTA를 접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한미 FTA 타당성 문제에만 너무 치중해서 논의를 전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의 논의는 체결과 비준을 전제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국내 산업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FTA의 역사는 그리 짧은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번 한미 FTA가 그 영향력에서 매우 크기 때문에 강조된 것이지, 기존의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등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양자간 FTA 보다는 다자간 FTA로 지역 또는 권역 경제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 들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 이유는 다자간 협상에서는 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각국의 이행과정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많은 국가가 관련을 맺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양자간 협상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양자간 협상은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면에서도 훨씬 간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FTA협상 국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산업구조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미 FTA협상 이후 국내법의 제개정 사항은 대략 50여개 법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법학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기초로 짧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한미 FTA 협정 내용을 처음 접하고 나서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NAFTA 규정을 잠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문화산업 부분인데, NAFTA에서는 캐나다가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괄적 면제조항을 문화산업 부분(Cultural Industry Exemption)에 규정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포괄적 면제조항을 기초로 스크린 쿼터 등, 할리우드의 대규모 문화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규정을 보면 그러한 포괄적 면제 조항은 찾아 보기 힘듭니다. 각각의 산업별 세부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추가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호해야 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 이러한 포괄적 면제조항을 규정할 수는 없는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한미 FTA규정을 보면 각종의 위원회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상품에 관련된 추가 협의도 상품위원회에서 양

국이 협의해서 추후 논의 또는 확정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도 관련 상품에 대해서 논의를 추후 진행하는 등 너무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를 우리나라 법제상 어느 부분에 위치시키는가, 그리고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서 실무 협상 중에 나온 의견이나, 또는 교수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닙니다만, 캐나다 교수가 NAFTA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그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산업 부분을 언급하면서, 캐나다 교수는 이제 FTA를 이용해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찾아야 하고, 모든 사회 정책적 논의는 국내법과 산업발전에 집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할리우드의 문화자본을 무서워할 것만이 아니라, 캐나다 국내에서 그 동안 투자 위험으로 인해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을 할리우드 자본을 자연스럽게 유치하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위험을 분산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협상, 넓게는 전세계 경제의 통합을 바라보면서, 외국 자본과 자유 무역 그리고 국내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대의적 안목에서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연구제안

■ 연구과제명 : 한미FTA 체결에 따른 법체계비교분석

■ 연구제안자 :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미FTA체결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의 법률체계의 차이를 인식하고 실제 적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체계비교분석이 필요함. 한국과 미국간의 법령용어에서의 차이점은 물론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에서도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안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이름아래 단순하게 비교한 것을 넘어 한국과 미국이라는 특정국가의 관점에서 법체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FTA체결이후 또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라고 할 수 있는 법령용어 및 법체계의 거리를 좁혀야 함. 이에 한국과 미국의 법뿌리를 넘어 혼합법계라는 관점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2		
본연구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비교법적 분석

■ 주요연구내용

- 한국법의 역사와 법체계
- 미국법의 역사와 법체계
- 분야별 법체계의 차이점과 극복방법

■ 기대효과

- 한미FTA 체결이후 법령용어 및 법체계의 차이에 발생하는 또다른 법적 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므로서 향후 한국법과 미국법을 혼합법계라는 관점에서 서로 차용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론을 분석하므로 향후 한미FTA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연구기간 : 2008년 4월 ~ 10월

▣ 연구과제명 : 한-유럽FTA 체결에 따른 법체계비교분석

▣ 연구제안자 :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유럽미FTA체결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과 유럽간의 법률체계의 차이를 인식하고 실제 적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체계비교분석이 필요함. 한국과 유럽간의 법령용어에서의 차이점은 물론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에서도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안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이름아래 단순하게 비교한 것을 넘어 한국과 유럽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법체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FTA체결이후 또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라고 할 수 있는 법령용어 및 법체계의 거리를 좁혀야 함. 이에 한국과 유럽의 법뿌리를 넘어 혼합법계라는 관점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2		
본연구			

제2차 FTA연구분과 워크샵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비교법적 분석

■ 주요연구내용

- 한국법의 역사와 법체계
- 유럽법의 역사와 법체계
- 분야별 법체계의 차이점과 극복방법

■ 기대효과

- 한-유럽FTA 체결이후 법령용어 및 법체계의 차이에 발생하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므로서 향후 한국법과 유럽법을 혼합법계라는 관점에서 서로 차용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론을 분석하므로 향후 한-유럽FTA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연구기간 : 2008년 4월 ~ 10월

■ 연구과제명 : 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법 및 경쟁법의 개선방안

■ 연구제안자 :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기적이지만 한미FTA체결에 따라 국내 시장환경의 변화는 투자자, 노동자, 환경 등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임. 그런데 미국과 한국간 소비자법을 비교해보면 국내소비자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향후 FTA연구분과에서는 한미FTA체결이후 국내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야 함. 예를 들면 소비자안전, 소비자거래, 분쟁해결분야에서 미국에는 있으나 국내에 없는 법제인 집단소송제, 징벌배상, 소비자품질보증법제, 소비자제품안전법제, 소비자신용보호법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법의 선진화는 소비자보호환경의 동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한편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산지, GMO 등과 관련한 국내법제의 선진화도 유도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시장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쟁법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야 함. 미국의 경쟁법과 국내 경쟁법의 비교를 통해 국내기업이 불리하거나 미국기업이 유리한 경우를 검토하여 국내경쟁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미국과 한국의 경쟁환경을 동등하게 해야 할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2		
본연구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비교법적 분석

■ 주요연구내용

- 한국 소비자법 및 경쟁법의 역사와 내용
- 미국 소비자법의 경쟁법의 역사와 내용
- 한국-미국간 소비자법 및 경쟁법의 차이와 개선방안

■ 기대효과

- 한미FTA 체결에 따른 법체계의 차이로 한국소비자에게 불리한 법분야인 소비자법 및 경쟁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므로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법 및 경쟁법의 통일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 및 기업에게 동등한 법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연구기간 : 2008년 4월 ~ 10월

- 연구과제명: FTA 분쟁해결절차의 모델화 방안 연구
- 연구과제 제안자(소속): 김 인 숙(경기대학교 법과대학)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의 FTA를 포함하여 5개의 FTA(아세안과의 상품FTA포함)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EU, ASEAN 등 6개국과 FTA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외에도 중국, MERCOSUR 등과의 FTA협상을 비롯한 50여개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협상에서는 WTO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무역 관련 분쟁해결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매우 주요한 이슈가 된다. 이는 WTO가 출범 후 10여년이 흘렀지만 분쟁해결제도가 갖는 결함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짐작할 수 있다.
 - 한국이 체결한 FTA 협상과정에서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논의 초점은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그러했듯이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제도의 존재논란에 치우치거나, 환경이나 노동 분야 등 특수분야에서의 분쟁을 일반적 분쟁해결 시스템에 의해 해결할 것인가 여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 지곤 했다.
 - 그러나 FTA상의 일반적 분쟁해결절차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FTA에 분쟁해결규칙을 하나의 독립된 장에 규정해 놓고 있고, 분쟁해결절차들은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들에 있어서도 분쟁해결시스템은 그 절차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FTA마다 분쟁해결의 소요기간, 패널의 선정절차, 사적 당사자의 제소권 보장여부, 패널보고서의 이행절차 및 기간 등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0여개 규모의 FTA가 체결될 경우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FTA들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및 운영상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이 체결할 FTA들에서의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통일화된 모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FTA의 일반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독립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음

■ 연구방법

- 한국이 체결한 FTA 분쟁해결절차들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주요국(미국, EU, 일본 등)이 체결한 FTA 분쟁해결절차 비교법적 분석
- FTA 분쟁해결 사례연구
- WTO 분쟁해결 사례연구

■ 주요 연구내용

- I. 서론
- II. FTA 분쟁해결규칙의 적용범위
 1. 특수 분쟁
 2. 일반적 분쟁
- III.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FTA 분쟁해결절차의 분석
 - 한국이 체결한 FTA 분쟁해결절차 분석
 - 주요국(미국, EU, 일본 등)이 체결한 FTA 분쟁해결절차 비교

법적 분석

2. 사례연구

- FTA 분쟁해결 사례연구
- WTO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사례 연구

3.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IV. FTA 분쟁해결절차 모델안

V. 결 론

▣ 기대효과

- FTA 분쟁해결절차 모델안 제시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통일화
- 분쟁해결절차의 통일화로 국내적으로 FTA 분쟁해결에 대한 대처가 용이

▣ 연구기간 : 2008년 1월 ~ 2008년 10월

▣ 연구과제명 : 남북경협 지원을 위한 법제 마련

▣ 과제 제안자 : 한국의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김호정 교수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과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남북 정권간의 비선조직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이 결정하고 시행되는 와중에 법과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따라서 국민들은 북한지원에 대한 정책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 역시도 깜짝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북교류의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등장할 남북경협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거 불투명하고 위법적인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과정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남북경협 지원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선행 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남한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제정된 뒤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6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설치와 기능, 남북한의 왕래와 교역, 협력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고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 수립,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교역대상 품목의 범위 결정, 협력사업 총괄·조정 및 지원, 관계부처 간의 협조추진 등을 심의·의결한다.

북한 역시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경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총 27조로 구성된 이 법은 전민족적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존중·신뢰, 유무상통 등의 남북경협 원칙을 명시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정확한 내용은 법조문을 검토해보면 이 법의 근본정신이나 원칙은 남한에서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남경협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통일적 지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임무, 사업의 기초와 방법, 재산의 이용 및 보호, 노력(인력) 채용, 사업조건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의 위 법은 남북경협의 초기과정에서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한 법제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를 예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제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도 이런 연장선 속에서 있다.

■ 주요연구내용(큰 목차를 중심으로)

-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
- 남북FTA의 전망
-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 남북경협 번제마련에 있어서 중요 고려사항
- 남북 시장의 접근성을 위한 기준과 인증제도의 마련

▣ 기대효과

- 본격화될 대북지원, 남북경협 지원을 위한 법제를 완비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남북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

▣ 연구기간 : 2008년 1월 ~ 2009년 12월(2년과제)

농업 및 제조업 분야의 무역구제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	
연구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 농업부문과 제조업 일부 분야에서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피해는 시장의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피해라기보다는 정부의 국가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필요 -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구제 시스템은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어왔으며,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존재함 - 따라서 본격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출범을 앞두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 및 제조업 분야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쟁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법적성격 - 조세로부터의 전입된 기금의 조성 및 집행의 법적 근거 -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통제매카니즘 - 무역구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비차별적대우의 가능성 - 지역적 무역구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권한 배분
연구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조성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 검토 - 기존의 정책지원자금의 조성과 관리상의 문제점 검토 (한·칠레 협정이후의 무역구제기금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와 감시매카니즘의 정착방안 검토 - 주무당국의 석명의무와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 정리

투자자-국가직접제소제도(ISCID)의 공행정행위영역의 제한에 관한 법적검토	
연구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행정행위이란 국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정당국을 통해서든, 공무수탁사인을 통해서든 이를 수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하며, 이러한 공행정행위에는 국가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까지도 포함 - 이러한 광범위한 행정작용은 때때로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으며, 국내법적으로 수용의 개념으로 이를 보호 -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투자자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조치들이 도입. 그 대표적인 것이 투자자-국가 직접 제소임. 물론 비합치조항으로 안보, 환경, 조세 등의 분야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하나, 동 제도의 본질은 어떠한 조치도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당국의 모든 규제적 행위들이 동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공행정행위의 정책제한성에 대한 법적인 연구검토가 필요
쟁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국가간 직접제소제도의 적용범위 - 정부의 행정활동영역의 제한 - 국민의 권리요구와 제한 - 비합치조치 분야는 완전제외? - 차별적 대우의 경우
연구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협정상외의 투자자 보호제도 검토 - 현행법상의 수용의 원리와의 괴리 검토 - NAFTA상의 투자자제소제도 사례 검토 - 개선방안의 도출

- 연구과제명 : 한-미 FTA상 농산물 세이프가드제도의 비교연구
- 과제 제안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최승환 교수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산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
 - 국내농산업 보호를 위한 적법한 구제제도로서 활용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FTA상의 농산품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독립된 선행 연구는 없음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사례연구
 - 비교연구(미국 및 한국이 체결한 FTA관련규정 조사)
- 주요연구내용(큰 목차를 중심으로)
 1. 농산품 세이프가드제도의 의의와 특징
 2. FTA상 농산품 세이프가드제도의 발동 요건 : 비교검토
 3. FTA상 농산품 세이프가드제도의 발동 절차 : 비교검토
 4. FTA상 농산품 세이프가드제도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 사례언급
- 기대효과
 - 농산품 수입증가에 따른 농민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FTA규정상 합법적인 농산품 수입규제제도 활용
- 연구기간 : 2008년 1월 ~ 2008년 5월